"전국수출입물류사업자단체"



🚗 한 국 관 세 물 류 협 회 부 산 협 회

(http://www.kcla.kr)

우48941 (부산 중구 중앙대로 80, 노블리안Ⅱ O/T 201호)/전화(051)977-0500~2/팩스977-0503 담당:서돔

문서번호 부산 제187호

2025. 3. 20 시행일자

(경유)

시 보세구역 운영인

조 잠

선 결				지시	v	
접	일	٨I		결		
수	번	<u>\$</u>		재		
처	리	과		공		
담	당	자		공 람		

제 목 : 관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

1. 관세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보세구역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프린데트 8C 노동교관 (- 아래 -

- ◎ 「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(25.3.11 시행)
 - 모든 보세구역에 대해 특허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 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(제4조)
 - 보수작업 신청(승인) 생략 대상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·제58조의2에 따른 표 시작업 추가(제7조)
 -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 서식 신설,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 제출방법 및 근거 서류 명시(제9조제1항제1호 단서)
 - → 별지 제3호 서식(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) 신설, 업무대행자, 재직확인 증명 서류를 사전에 첨부하여 제출
 - ◎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(25.1.1 이후 연장 신청분부터 적용)
 -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(「관세법」 제177조 개정)

(종전)·내국물품: 1년 범위

(개정)·내국물품 : 1년 범위 + 1년 연장가능

- ◎ AEO 공인업체에 대한 과태료 경감 혜택 폐지(「관세법 시행령」개정, 25.2.28 시행)
 -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에 대하여 제공되어 오던 공인등급별 과태료 경감 근거 규정 폐지([별표5]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라목 삭제)

한 국 관 세 물 류 협 회 부 산 협



별지	제3호/	너식)							
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									
신 청 인	보/	네구역	격명				보세구역	부호	
	전 화 번 호								
신 청 내 역	구		분	직	책	성	명	생	년 월 일
	보	세	사						
	업무대행자								
	사		유						
	대 행 기 간								
「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9조에 따라보세사 업무대행을 신고합니다.									
					년	ÓF	일 일		
				신 *	청인 :		(서	명 !	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첨부서류 :	수수료
1. 보세사의 휴가・교육・해고・징계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.	
2. 업무대행자 재직확인 증명 서류 1부.	없 음